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9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이상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영한, 박철성, 박환희, 성흠제, 송도호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이병윤, 이봉준, 이소라, 이종태, 이효원, 임만균, 채수지, 최민규, 최진혁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5명)

1. 제안이유

-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 상황으로 청년 고용 정책에 불안정성이 매우 증가한 바, 청년 고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제1호~제8호의 신설).
- 나. 조문 신설에 따른 현행 조문의 이동(제8조~제13조)
- 다. 제7조의 신설된 “청년일자리 지원 사업”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“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”으로 인용함(안 제12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년기본법」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·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직업능력개발 훈련”을 “직업능력개발훈련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청년 일자리”를 “청년일자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람중”을 “사람 중”으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청년일자리 지원 사업)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직장체험 기회 제공
 2.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
 3.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제공
 4.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
 5. 취업 알선
 6. 온·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
 7.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
 8.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2조(중전의 제11조)제1항 중 “청년일자리 창출”을 “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① ~ ③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 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④ 시장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 법」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취 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⑤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등의 상황이 발 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·지원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5조(청년일자리 기본계획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1. ~ 3.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4. 청년 구직자를 위한 <u>직업능 력개발 훈련</u>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5. ~ 7. (생 략)</p>	<p>제5조(청년일자리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----- ----- 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4. ----- <u>직업능력 개발훈련</u>-----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③·④ (생략)

제6조(청년일자리위원회) ①·②
(생략)

③ 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
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
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
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청년 일
자리 사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
한다.

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
공무원, 시의원, 전문성과 경험
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
임명 또는 위촉하되, 청년 당사
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
다.

⑤ ~ ⑨ (생략)

<신 설>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청년일자리위원회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청년일자
리 -----

④ -----

----- 사람 중 -----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청년일자리 지원 사업) 시
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
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
있다.

1. 직장체험 기회 제공
2.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
3.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·
운영 및 제공
4.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
5. 취업 알선

제7조 ~ 제10조 (생략)

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

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2조 (생략)

6. 온·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

7.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

8.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 ~ 제11조 (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

제12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

-----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각호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